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3.12.15.(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8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3. 12. 11 :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003. 12. 12 :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 우리도의 「참여복지」 수준을 Up-Grade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
- 벤처기업 창업의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창벤처프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며
- 2003. 8. 30 신설된 증평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1. 1. 16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부터 증평군 설치 이전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증평군으로 무상양여하고

- 음성군이 금왕 다목적운동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을 매각함에 있어 운동장 부지중 도유지의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연 5,455㎡(1,650평, 지하 1층, 지상 5층)
 - 지하·옥탑 :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 1~3층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기 전시관, 물류창고 등
 - 4 층 : 사회복지단체 사무실(17개)
 - 5 층 : 대강당, 프로그램실, 점자도서관
- 사업기간 : 2003~2005
- 사 업 비 : 5,500백만원(국비 500, 특별교부세 2,000 도 비 3,000)

□ 재산의 처분

《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오창벤처임대공단내)
- 재산규모 : 연 7,124㎡(2,155평, 지하 1층, 지상 6층)
- 매각시기 : 2003. 12
- 재산가액 : 6,700백만원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의 일원
- 재산규모

- 토 지 :	380필지	185,075.2㎡(55,985평)
- 건 물 :	21동	12,478.8㎡(3,774평)

- 양여시기 : 2003. 12
- 재산가액 : 5,596백만원(토지 3,568 건물 2,028)
- ※ 양여조건 : 양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반환하여야 함

◀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 ▶

- 위 치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45외 2필지
- 재산규모 : 3,031㎡(917평)
- 매각시기 : 2003 ~ 2004
- 재산가액 : 594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를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과, 오창벤처프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각, 중평군 출범에 따른 도유재산의 무상양여, 음성군 금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현 운동장부지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공유지(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55억(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우리 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불우계층의 삶의 질과 충청북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할 것이나, 센터의 건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오창벤처프라자 건물매각》 계획은

벤처기업 창업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오창벤처프라자를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여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입주업체 모집에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여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건물 미준공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법적 흠결의 존재여부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건물구입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중평출장소개청이후 취득 중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 계획은

2003. 8. 30일 중평군의 개청으로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평출장소 개청(1991.1.16) 이후 중평출장소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피산군과충청북도중평출장소간의행정협약서 제4조에 의거 중평군으로 무상 양여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양여하려는 주요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금왕공설운동장 부지매각》 계획은

음성군에서 금왕읍 금석리에 다목적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재의 금왕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공설운동장 부지 23,967㎡ 중 도유지 3,031㎡를 일괄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도유지는 성격과 매각방법,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 심의의결

- | | |
|-----------------------------|------|
| 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 : 승인 |
| 나. 오창벤처프라자건물매각 | : 승인 |
| 다. 증평출장소개청이후취득증평군관내도유재산무상양여 | : 승인 |
| 라. 금왕공설운동장부지매각 | : 승인 |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